



---

#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분석 및 검토

---



2019. 7.

#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분석 및 검토

## □ 고용위기지역 지정 개요

구 분	주요 내용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, 고용보험법 제21조·제22조</li> <li>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</li> </ul>
목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함</li> </ul>
신청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자치단체장 → 시도지역고용심의회 의결 후 신청 → 현장실사 → 고용정책심의회 심의</li> </ul>
지정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피보험자 감소(전국 평균 및 전년대비)</li> <li>신규 구직급여 신청자수 증가</li> <li>3년간 피보험자수 지속감소</li> </ul>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, 사회보험료 남부 유예</li> <li>재직자 및 실업자 훈련지원, 훈련연장급여(최대 2년 구직급여의 100%), 취업성공패키지</li> <li>구직급여+특별연장급여, 생활안정자금융자(300만원)</li> <li>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,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, 지역고용 촉진지원금</li> </ul>
지정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개 지역</li> <li>* 울산동구, 거제, 통영, 고성, 창원진해, 군산, 목포/영암</li> </ul>
지원기간	<p>1년(연장 가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용위기지역(7개 지역) 모두 지정기간이 연장된 상황</li> </ul>

## □ 구미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분석

○ 구미시 피보험자수 및 구직급여 신청자수 현황

기 간		'18.6. ~ '19.5.	'17.6. ~ '18.5.	'16.6. ~ '17.5.	'15.6. ~ '16.5.
피보험자수(명)	구미	105,799	106,022	104,891	105,600
	전국	13,397,818	12,947,974	12,651,949	12,331,811
구직급여 신청자수(명)	구미	60,442	45,176	49,728	47,744
	전국	5,412,532	4,784,201	4,580,913	4,535,481

\* 자료: 고용행정통계(<https://eis.work.go.kr/index.do>)

\* 주 : 연평균 피보험자수 및 구직급여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함

○ 지정요건 분석 결과

유형	지정요건	분석 결과	지정 기준	충족 여부
Type A	①구미 증감률: 0.2% 감소 - 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799명 - 그 전 1년간 평균 비보험자수: 106,022명	전국 대비 3.7%p 낮음	전국 평균 보다 5%p 이상 낮은 경우	충족 안됨
	②전국 증감률: 3.5% 증가 - 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3,397,818명 - 그 전 1년간 평균 비보험자수: 12,947,974명			
	③전국 대비 3.7%p 낮음			
Type B	①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799명	0.2% 감소	5% 이상 감소	충족 안됨
	②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6,022명			
	③증감률: 0.2% 감소			
Type C	①신청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: 60,442명	33.8% 증가	20% 이상 증가	충족
	②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: 45,176명			
	③증감률: 33.8% 증가			
Type A	①신청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799명	0.2% 증가	7% 이상 감소	충족 안됨
	②그 3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: 105,600명			
	③감소률: 0.2% 증가			
Type C	지역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	해당 사항 없음	-	-

구미시는 Type A, B, C 모두 충족하지 못함

## □ 종합검토

- 구미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,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은 불가
- '14년 이후 구미시 전체 피보험자수는 증가추세. 다만 지역 주력업종인 전자부품 업종의 피보험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
  - 전자부품 업종의 고용감소를 지역내 타산업의 고용증가로 이를 상쇄
  - \* 구미시 전체 연평균 피보험자수 : ('14년) 104,713명 → ('18년) 105,999명
  - \* 전자부품/통신장비 제조업 연평균 피보험자수 : ('14년) 22,060명 → ('18년) 17,643명

(단위: 명)

기 간		2014	2015	2016	2017	2018
구미시 전체		104,713	105,914	104,734	105,756	105,999
주 요 업 종	전자부품 등	22,060	22,418	20,426	19,340	17,643
	기타기계/장비제조	8,101	8,567	5,423	8,888	9,285
	화학물질/화학제품	5,096	5,126	5,190	5,303	5,788
	사회복지서비스업	4,615	4,870	5,180	5,569	6,137
	보건업	3,210	3,447	3,693	3,798	3,978

\* 자료: 고용행정통계(<https://eis.work.go.kr/index.do>)

\* 주 :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함

- 따라서 지역의 기존 주력업종과 대체업종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, 그 변화에 적합한 지역산업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
  - \*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고용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며, 단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

## [참고자료]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

[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20호)]

제4조(지정기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다음 제1호에서 제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,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·산업·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 때로 한다.

1. 고용보험 피보험자(이하 "피보험자"라 한다) 증감률(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)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%p 이상 낮은 경우
2.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
3.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
4.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%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5.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